

행정처분의 기준 (제36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- 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는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3년 이상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 - 5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관련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 반 사 항	근 거 법 령	행 정 처 분 기 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 11조제3항, 법 제14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	법 제23조의6 제2항제4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
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법 제15조의 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 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					
2) 법 제11조제4항,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의6 제3항제3호	경고	업무정지 10일	업무정지 20일	업무정지 30일
3)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	법 제23조의6 제3항제4호	경고	업무정지 10일	업무정지 20일	업무정지 30일
4)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의6 제3항제5호	경고	업무정지 10일	업무정지 20일	업무정지 30일
5) 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	법 제23조의6 제3항제1호	업무정지 10일	업무정지 20일	업무정지 30일	업무정지 60일
6)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				
가)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	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나)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		지정취소			
다)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	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라)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		지정취소			
마) 삭제 <2013.5.31>					
바) 삭제 <2013.5.31>					
7)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3조의6 제3항제6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
8)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					
가)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지정취소				
나)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아니한 경우		지정취소				
9)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		
10) 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	법 제23조의6 제2항제2호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		
11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	법 제23조의6 제2항제3호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		
12)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(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)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23조의6 제3항제2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
13) 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	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	지정취소				
14)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,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23조의6 제3항제7호	경고	업무정지 10일	업무정지 20일	업무정지 30일	
15)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, 누출검사,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	법 제23조의6 제2항제5호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		

한 경우 16) 법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	법 제23조의6 제2항제6호	업무정지 1 개월	업무정지 3 개월	업무정지 6 개월	지정취소
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

나.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 반 사 항	근 거 법 령	행 정 처 분 기 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	
2)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23조의10 제3항	경고	영업정지 1 개월	영업정지 3 개월	영업정지 6 개월
3)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1항제2호				
가)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등록취소			
나)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않은 경우		등록취소			
3)의2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3조의10제1 항제3호	등록취소			
4)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 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 개월	영업정지 6 개월	등록취소
5) 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 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2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 개월	영업정지 6 개월	등록취소
6) 법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	법 제23조의10 제2항제3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 개월	영업정지 6 개월	등록취소

경우						
7)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4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
8) 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·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5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
9)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6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
10)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7호					
가)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나)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		등록취소				
다)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라)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		등록취소				
마) 삭제 <2013.5.31>						
바) 삭제 <2013.5.31>						
11)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8호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		
12)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	법 제23조의10 제2항제9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